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41호 2009. 5. 19.

조 례

제81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818호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819호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82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제82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22
제82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25
제82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32

고 시

제2009-21호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체납차량 단속 업무 위탁 고시	40
-----------	-----------------------------	-------	----

공 고

제2009-399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42
------------	-------------------	-------	----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2009. 2. 12 공포·시행된 「주민투표법」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하여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 등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하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구의 책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

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

다.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열람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현) 주민등록번호 → 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현) 주소 → 개) 주소, 거소, 체류지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3조제2항 및 단서, 제15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내지 제6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호,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장 (인) </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인	서명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 를 기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조항 개정 필요.
- 나. 세부담급증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현행 재산세제 일부개정 사항 반영.

2. 주요골자

- 가.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 토지·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
- 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
 -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조정.
- 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의 하향 조정
 - 지방세법 195조의 2 【세부담상한】 조항은 재산세액 결정에 있어 중요한 조항임에 따라 구세조례 세율편에 신설.
 -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조항.
 -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3억원 이하 105/10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100, 6억원 초과 130/100으로 3단계 상한율로 함.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21조의2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영 제1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의3의 신설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증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증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증량구청장

서울특별시증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세부담 경감 필요.
- 나. 재래시장 쇼핑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 촉진.

2. 주요골자

- 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 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면제(현행 5년간 50%감면  100% 면제로 확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구민에게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용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를 둔 구민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장난감 대여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다. 장난감 대여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완구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장난감 대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 대여센터”라 함은 장난감 등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라 함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장난감 대여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 ① 장난감 대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취학전 아동의 가족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그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다만, 불량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납품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제6조(회비의 납부) ① 회원에 대하여는 연단위로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7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저소득자
2. 장애인세대(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영·유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제10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 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1. 제정이유

- 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 나. 현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 가.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둘째 이상 신생아 출생시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지급
- 나.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5세까지 양육비 보조
- 다.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이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 라.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된 지원금 환수
- 마. 주민센터에 지원금 신청대장, 구청에 지급대장 비치·관리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영유아"라 함은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라 함은 둘째 이상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양육비"라 함은 셋째 아이 이상의 영유아의 양육 보조금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둘째 이상 신생아부터 지급하되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신생아 별로 지급한다.

②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는 출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50%를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동안 신청자의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매월15일 주민등록 등재사실 기준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량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축하금 또는 양육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인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제4조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타기관 출생신고 통보 포함)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중량구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② 동장은 신청서를 검토 및 기록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비치) 동장은 지원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총칙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 평생교육진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나. 평생교육협의회

-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간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다. 평생학습관

-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평생교육 정보수집·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 징수

라. 보칙

-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지원된 경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 확인 및 지도·감독

마. 부칙

- 종전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와 위원의 임기는 본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봄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생교육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움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도시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시책개발과 조사·연구 활동 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랑구에 소재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하고, 평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참여자와 단체 및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구민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기타 관련자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및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제9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는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4.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부서)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 3 장 평생학습관

제16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발전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 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연구
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운영 등)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수강료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구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자격기준) 평생교육담당 과장을 제외한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2급 이상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2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협의회 및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학교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

-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함
-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함

나. 급식경비 지원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라. 지원방법

-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 추천한 자로 위촉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의위원회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급식지원대상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내역 등의 심의

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 등을 수행
-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가능

사.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학교급식 지원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 마. 생산자 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랑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운영계획
 2.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학교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학교의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5.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 경비의 산출내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 내역을 지원자인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사업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
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관련국(과)장
3. 서울특별시중량구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학교 급식분야 전문가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8.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량구 학교급식지원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구의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무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6. 학교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6. 중량구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학교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 및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학교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한다.
-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제도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9-21호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체납차량 단속 업무 위탁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체납차량 단속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며, 그 적용은 2009. 5. 15일부터 적용한다.

2009. 5. 1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체납차량 단속업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이 상호간에 이를 위탁 및 수탁한 것으로 한다.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차량 수색, 차량을 강제견인하여 공매대행회사에 이동시키는 업무 등(이를 “체납차량 단속업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이 다른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를 찾아낸 자치구청장이 체납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차량을 강제견인하여 공매대행회사에 보관시킨 경우에는 위탁한 구청장에게 강제견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강제견인 이후 체납처분 절차는 위탁한 구청장이 처리한다.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체납차량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한 자치구청장이 부담하며, 위탁한 구청장은 별도의 징수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399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아래 건축허가 신청 토지는 지적 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 신청된 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09. 05. 19.

중 랑 구 청 장

1. 건축허가 위치 : 중랑구 신내동 273-1호 필지 상 12건
2. 도로지정 현황

도로지정 위치	면적(지목)	도로너비(m)	도로 길이(m)
신내1동 273-1호	1,221.00m ² (임야)	6.00	180.2
		4.00	29.1

3. 도로지정 근거 : 「건축법」 제45조제1항
4.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09.05.20. ~ 2009.06.02.)
5. 문의기관 : 중랑구청 건축과 (☎ 490-3390~1)
6. 도로지정 관련 위치도 및 현황도는 건축과, 신내1동주민센터 열람가능 함.